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자산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8963/0991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삼성KODEX Japa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
- 다. 보관 • 관리기간: 2012.02.19 - 2012.12.31
-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
-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한금융투자,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SK증권, 동부증권, 제이피모간증권

2.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2.06.29	제12조 (투자신탁회계기간)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다만, 2012년 2월 18일 경과후에 도래하는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 하며,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2012년 2월 18일 경과후의 최초회계기간 : 2012년 2월 19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매1년간
2012.06.29	제38조	① 생략	① 생략

(투자신탁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준일(단,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을 제외하며, 이하 “분배금지급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생략> “분배금지급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생략>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준일(단, 회계기간 종료일을 제외하며, 이하 “분배금지급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생략> 1. 생략 2.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 직전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도래하는 매분배금지급기준일까지 3. 생략	
2012.06.29	제39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5. 수익자 총회 관련 비용 6. ~ 9. 생략 10.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 9. 생략 10.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등 수익증권의 상장 관련 비용 11. 법 제 442 조에 의한 분

		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추 가 추 가 추 가	담금 비용 12. 해외보관 대리인 관련 비용 13. 추정 NAV 산출 등 한국 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14.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2012.06.29	제41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1. 지급 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영업일	①-1. 지급 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012.12.17	제38조 (투자신탁보수)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0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6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4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3
2012.12.17	제40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해지하여야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한다. 1.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2. 집합투자업자가 공의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	--	--

		<p>지일(이하 “해지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출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p>③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p>
--	--	---

			<p>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 2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2012. 12. 17	<p>제48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p>	<p>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p> <p>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p>	<p>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p> <p>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p>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사유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
2012.06.29	말소	김남의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학사 -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 1팀	2110000109
2012.06.29	신규	정승호	-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 2팀	2110000108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변경 일	변경후			
회계 감사인명	계 약 기 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회계 감사 인명	계 약 기 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안진회계 법인	1 년	55 만 원	서면 계약	-	-	-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